

RESEARCH ARTICLE

Problems and Reform of Korea's Copyright Royalty Determination System: Proposals for Structural Improvement

Dong-Hui Kim

Ph.D. Student in Law,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Dong-Hui Kim (yurianna78@naver.com)

ABSTRACT

Korea's current system for determining copyright royalties has played a role in preventing monopolistic practices by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in maintaining fair-trade practices. The system has functioned as a form of government intervention aimed at balancing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copyright holders and users, while also supporting the broader goal of advancing the cultural industries. However, in today's rapidly evolving environment—marked by digital innovation, diversification of media content, and the rise of platform-based industries—the existing state-approval mechanism is criticized for its inflexibility, its constraints on service innovation, and its potential to undermine the core values of copyright, namely autonomy and creativity.

In particular, the principle that prices in the private sector should primarily be determined through free market negotiations is gaining support. The current state-driven approval process for copyright royalties imposes excessive administrative burdens, delays, and uncertainty. Paradoxically, by restricting the autonomy of contractual relationships between rights holders and users, the system may generate more disputes and unnecessary social costs.

This study diagnoses the structural problems inherent in the current royalty determination system and, from a practitioner's perspective, presents practical directions for improvement by conducting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copyright royalty determination frameworks in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Japan, the United Kingdom,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KEYWORDS

Copyright Royalties, Approval System, Ex Post Control Mechanism, Arbitration System, Copyright Tribunal, Copyright Arbitration

Open Access

Received: July 21, 2025

Revised: July 29, 2025

Accepted: August 27, 2025

Published: September 30, 2025

Funding: The author received manuscript fees for this article from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 2025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원저

현행 사용료 결정 방식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저작권 사용료 분쟁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제언

김동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

교신저자: 김동희 (yurianna78@naver.com)

차례

1. 서론
2. 현행 저작권 사용료 결정 방식 분석
 - 2.1. 제도의 개요 및 법적 구조
 - 2.2. 승인제의 핵심적 특징
 - 2.2. 운영상 주요 문제점 및 한계
3. 비교법적 고찰과 해외 사례 분석
 - 3.1. 개관
 - 3.2. 일본의 협의 및 재정 제도
 - 3.3. 영국의 저작권심판소 제도
 - 3.4. 독일의 저작권중재소 제도
 - 3.5. 미국의 저작권사용료심판소 제도와 캐나다의 저작권위원회 제도
 - 3.6. 소결 및 시사점
4. 국내 적용 가능성 및 개선 필요성
 - 4.1. 주요 사례 분석 : 음악 저작권 사용료 분쟁 등
 - 4.2. 해외 제도의 이식 가능성과 국내 사회적 조건 검토
 - 4.3. 국가 개입의 이론적 근거와 시장 자율성의 조화
5. 제도 개선 방향
 - 5.1. 제도 개선의 필요성
 - 5.2. 승인제의 단계적 완화 및 유연화
 - 5.3. 재정·중재 제도의 도입 및 법제화
 - 5.4. 정보 공개 확대와 투명성 제고
 - 5.5. 협상 역량 강화 및 이용자 보호 제도 개선
 - 5.6. 종합 및 기대 효과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 사용료 결정 방식은 신작관리단체의 독점적 운영을 견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이 제도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자의 접근 권리라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국가의 개입 방식으로, 문화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뒷받침해왔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 콘텐츠 유형의 다양화, 플랫폼 산업의 부상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현행의 국가 승인 중심 구조는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자율성과 창의성이라는 저작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적 계약 관계에서의 가격 결정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저작권 사용료를 사전적으로 개입·결정하는 방식은 행정절차의 복잡성, 예측 불가능성, 불필요한 시간 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로 인해 관리자와 이용자 간 자율 협상은 위축되고, 오히려 분쟁이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확대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한 후, 일본,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저작권 사용료 결정 제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실무 관점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저작권사용료결정제도, 승인제, 사후통제방식, 재정제도, 저작권심판소, 저작권중재소

1. 서론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제도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콘텐츠 산업의 확장으로 인해 저작권 제도의 역할과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인공지능(이하 'AI') 기반 콘텐츠 등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생산과 소비가 확산되면서 저작권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저작권 사용료 결정 방식은 콘텐츠 산업과 밀접하게 연동된 정책 영역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의 설계는 저작권 생태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는 신작관리단체¹⁾가 결정한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자율적 협상만으로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로 작용하여, 특히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콘텐츠 산업의 창의성과 민첩한 대응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저작권의 거래가 실질적으로는 사적 자치에 기반한 계약 관계로 구성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적 권한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구조는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신작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의 협의가 승인 과정에서 무력화²⁾되거나, 승인 지연으로 인해 서비스 출시가 늦어지는 등의 사례³⁾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승인제의 실효성 및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해외 주요국이 저작권 사용료 결정에서 시장에서의 자율협상을 우선으로 하고, 정부의 통제나 중립적 심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사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제도와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저작권 사용료 결정 방식, 특히 승인제의 구조적 문제와 한계를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서 자율적 결정 구조와 사후적 조정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틀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 진단, 둘째, 주요국 제도 비교분석, 끝으로, 국내 현실에 맞는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하여 제도의 이식 가능성과 사회적 정합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2. 현행 저작권 사용료 결정 방식 분석

2.1. 제도의 개요 및 법적 구조

저작권 사용료 결정 제도는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문

- 1) 이하에서는 저작권신작관리업을 영위하는 단체를 '신작관리단체'로 통칭하기로 함.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관리사업자' 또는 '관리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함.
- 2) 신작관리단체와 이용자가 합의한 사용료라도 저작권법 제105조 제10항에 의거하여 승인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반려될 수 있음. 이는 양 당사자의 협의가 승인제도에 의해 실제 무력화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특히 승인 신청이 반려되면 적용 자체가 어렵게 되어 당사자 간 합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됨.
- 3) 2004년 멜론의 기간제 서비스는 저작권 처리에 대한 의견 차이와 승인 지연으로 2005년 말에 되셔야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고, 소리바다 역시 권리자 및 신작관리단체와의 저작권 사용료 합의와 승인 절차로 인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바 있음. 관련 내용은 최진원, "음악산업 발전과 징수규정 승인제도에 대한 소고", 『정보법학』, 제16권 제3호(2012), 39면.

화 및 콘텐츠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다. 우리 저작권법(이하 ‘법’)은 저작권 사용료의 결정과 관련하여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두고 있으며, 동 법 제105조 제9항은 신탁관리단체가 정하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대해 문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신탁관리단체의 독점적 운영과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저작권 시장 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신탁관리단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다. 그리고 이들은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아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사용료 징수 업무를 수행한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신탁관리단체는 12개이며(휴업 중인 한국영화배급협회 제외)⁴⁾, 각 단체는 음악, 영상, 출판 등 특정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독점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신탁관리단체의 구조적 특징은 음악 저작권 분야⁵⁾(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저작물이나 저작인접권 분야별로 1개의 단체가 사실상 독점적·우월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복수사업자 경쟁에 따른 가격 조정이나 자율적 시장 교정 기능이 충분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는 신탁관리단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권 이용허락을 거부하거나, 저작권자 및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하는 등 부당한 사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신탁관리단체가 징수 기준으로 삼는 사용료 금액이나 요율은 반드시 문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 사용료 승인 절차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위’)의 심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신탁관리단체의 자의적 결정이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고, 저작권 사용료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약하건대, 우리나라 저작권 사용료 결정 제도는 창작자와 이용자 간 권익 균형을 도모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승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저작권 시장의 균형 있고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승인제의 핵심적 특징

현행 승인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승인제는 신탁관리단체가 사용료 기준이나 요율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드시 문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⁶⁾는 점에서 강한 공적 통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 사용료 산정 과정에 국가의 공적 개입⁷⁾을 강화하여, 신탁관리단체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시장 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4)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공직유관단체로 신규지정, 투명성·신뢰성 제고. 붙임2.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및 보상금수령단체 현황자료”,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1645>, 검색일: 2025. 7. 20.

5)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 - 문체부,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3721>, 검색일: 2025. 7. 20.

6)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 전단.

7) 국가의 공적 개입과 같이 비자발적 이용허락의 문제점은 사용료가 시장가격과 괴리된다는 점에서 연결되며 특히 정부 등에 의해 사용료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주의 깊은 분석보다는 정치적인 거래에 의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 임원선, “저작권 이용허락 효율화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07, 69면.

둘째, 승인 과정에서 저작권자, 이용자,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고 조정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며⁸⁾, 이를 통해 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 신속한 결정이나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⁹⁾.

셋째, 승인을 받은 사용료는 해당 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해당 영역의 전체 이용자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별 이용자와의 맞춤형 협상이나 특정 상황에 적합한 유연한 요율 설정이 제한되고, 신유형·혁신 서비스 등 실제 산업 현장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OTT, AI 등 신기술 기반 신유형 서비스에도 즉각 대응하지 못해 실제 이용형태나 경제적 가치와의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넷째, 사용료의 승인 결과에 있어 요건이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 규정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해당 신탁관리단체 실무자의 자의적 해석 개입 여지가 존재한다. 이는 사용료 산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정보 비대칭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 승인제는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시간 지연¹⁰⁾ 등 신속한 시장 대응력 부족으로 산업 현장에서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승인 과정이 경직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신속한 시장 대응이 요구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자율조정과 창의적 협상의 기회를 저해하는 등 제도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2.3. 운영상 주요 문제점 및 한계

2.3.1. 과도한 행정 개입과 시장 자율성 침해

저작권 사용료 결정은 본질적으로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기반한 사적 거래의 영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행 승인제는 정부의 강한 행정 개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시장의 자율성과 민간 영역의 자치적 협상 구조에 다양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게 강화될수록 이용자는 신탁관리단체와 개별적으로 요율을 협상하거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건을 도출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이나 신규 서비스 사업자와 같은 이용자 측의 정보·자원 측면에서 더욱 취약하여 시장 진입과 혁신적 협상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승인된 요율은 창작물 가치나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권리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신유형 콘텐츠 또는 플랫폼에 부적합한 구조적 부작용은 장기적으로 산업의 역동성과 창의성 저해와 같은 성장동력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듯 승인제는 시장 참여자 간 신뢰를 약화시키고 저작권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며 저작권 시장의 전반적인 자율성과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3.2. 절차의 비효율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저작위의 심의와 이해관계자의견 수렴 등 여러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며,

8)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 후단,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4항.

9) 이정현, 「OTT 음대협, 정부에 “업계 - 음악창작자 상생논의의 장 마련을”」, 연합뉴스, 2024. 2. 1자.

10)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추가 보완 요청과 의견 조율 등이 반복되어 행정적 부담이 상당하다¹¹⁾.

그리고 이러한 승인 과정에서 요구되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심의, 의견 수렴 등은 단순한 절차적 불편을 넘어 저작권 시장 전반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디지털 환경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서는 승인제의 경직성이 유연한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플랫폼 기반의 신규 서비스나 단기 라이선스 상품 등과 같이 비정형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의 경우, 승인 절차로 인해 콘텐츠 유통의 적기를 놓쳐 사업 기회를 상실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승인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결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신탁 관리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은 승인 시점이나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다. 그 결과,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출시 일정이 승인 지연으로 늦어지거나, 승인 반대로 인해 서비스 출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등 사업 차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승인 절차의 불확실성과 지연으로 인해 플랫폼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한 해외 저작물 활용을 선호하거나 국내 창작물의 라이선스 확보를 꺼리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내 창작물의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2.3.3. 신기술 및 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족

OTT, AI 기반 콘텐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현행 승인제는 이러한 신기술 유형에 적합한 요율 기준과 정책적·전문적 대응력 마련이 매우 부족하다. 이로 인해 OTT 등 새로운 서비스 유형에 기존 요율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실제 이용형태나 수익구조, 기술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 등 산업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요율 산정으로 이어져 서비스 제공자와 창작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OTT 사업자는 기존의 방송 사용료 요율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요율을 적용 받음으로써, 이중부과 및 수익성 악화 등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¹²⁾.

그리고 AI의 사전학습을 위한 데이터 라이선스, AI가 생성한 저작물의 권리 귀속 등 새로운 법리 쟁점이 발생, AI 사업자와 권리자 간 라이선스 비용, 저작권 침해 경계 기준 등에서 이견이 심화되고 있다¹³⁾.

이러한 신기술 기반 서비스에 적합한 새로운 요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협의, 저작위의 심의, 문체부장관의 승인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런데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 심지어 심의를 하는 위원회나 요율을 승인하는 문체부조차 신기술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이나 경험 없이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심의 및 승인 과정에도 이러한 한계가 드러난다. 그리고 그 결과, 실제 산업 현장과 괴리된 기준이 마련되거나 보수적인 접근이 우선시되어 기술혁신보다 행정적 준수가 강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며, 국내 창작자와 사업자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1) 안호천, 「문체부 “OTT 음악사용료 징수율 1.5% 높지 않다”...4개월간 다양한 의견 수렴」, 전자신문, 2020. 12. 20자.

12) 이세연, 「대법원 결정에도...OTT-음악저작권계 “아직 할 말 많아”」, Fortune Korea, 2024. 2. 2자.

13) 박송이, 「“AI 학습, 저작권 침해 아냐” 잇단 판결...저작권 논쟁 새 국면?」, 주간경향, 2025. 7. 14자.

2.3.4. 공익 목적의 이용자와 중소기업자의 접근성 저하

문화시설,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공익적 목적의 이용자와 소규모 창작자,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자는 저작권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과 자원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 이들은 승인 제도의 복잡한 구조와 높은 비용 부담 때문에 콘텐츠 이용을 아예 포기하거나, 정식 절차 대신 비공식적인 경로를 선택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용료 기준이 공개되지 않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일부 이용자들이 저작물 이용 자체를 회피하거나,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저작물을 위법하게 이용할 위험에 노출된다. 이러한 문제는 저작권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저작권 보호와 이용 촉진이라는 법적 목표의 동시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현행 승인제는 자원과 정보 측면에서 취약한 이용자와 중소기업자에게 과도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창작물의 합법적 유통과 문화산업의 저변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절차의 간소화, 정보의 투명성 강화, 공공 목적의 이용자나 소규모 이용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접근성 개선 방안이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

2.3.5. 분쟁 예방 기능의 한계

승인제는 저작권 사용료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볼 수 있지만¹⁴⁾, 실제로는 승인 이후에도 불복 절차나 민·형사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승인된 요율이나 기준에 대해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에 충분한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드러내며, 승인제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승인 이후 발생하는 분쟁은 문체부의 행정지침만으로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결국 사법적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분쟁은 사업자에게는 영업 위축과 불확실성을, 저작권자에게는 예측하기 어려운 수익 구조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겨준다.

결과적으로 현행 승인제는 분쟁 예방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갈등과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승인 과정에서 실질적인 합의 도출과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강화, 그리고 사후 분쟁 조정 및 중재 시스템의 체계적 보완 등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3. 비교법적 고찰과 해외 사례 분석

3.1. 개관

저작권 사용료 결정 방식은 각국의 법체계와 문화정책, 저작권 산업의 구조, 기술 발전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우리와 같이 승인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드물고, 대부분의 국가는 자율적인 협상 구조를 우선시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나 독립적인 심판기구가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4) 승인제는 그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사용료의 요율과 금액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 이용자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자의적인 사용료 책정을 제한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용료 징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신탁관리단체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분쟁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하고자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OTT, AI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에서 사용료 기준 설정에 대한 갈등이 빈번해짐에 따라 각국의 분쟁 해결 체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례 중심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각국의 저작권 사용료 결정 구조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 제도와 차이점 및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3.2. 일본의 협의 및 재정 제도

일본은 1939년부터 신탁관리단체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부당한 가격 인상 등 독과점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여,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규정을 인가제로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우리 저작권법 제105조 승인제와 유사한 특징을 가졌다.¹⁵⁾

그런데 2000년 11월, 일본은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이하 ‘관리사업법’)」을 제정하고 2001년 10월부터 본법을 시행하면서 60여년 넘게 유지해 온 인가제를 폐지하고 저작권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가 사용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신고제로 전환하였다.¹⁶⁾

그 결과, 사용료 결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되¹⁷⁾, 사용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아울러 복수의 관리사업자 설립을 허용하여 시장 경쟁을 통해 사용료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¹⁸⁾.

한편, 일본 문화청(이하 ‘문화청’) 장관은 시장 영향력이 큰 관리사업자를 ‘지정관리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¹⁹⁾. 지정관리사업자는 이용자 대표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하며²⁰⁾, 이 협의가 결렬되거나 거부될 때에는 문화청 장관이 협의 개시·재개 명령을 내릴 수 있다²¹⁾.

그럼에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부당·불공정 사례가 발생하면, 문화청 장관은 ‘재정(裁定) 제도’를 통해 사용료 조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²²⁾. 이때, 문화청 장관은 반드시 문화심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²³⁾. 재정 제도는 당사자 간 협상이 결렬될 때 제3자인 행정기관이 중립적으로 이용 조건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시장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정을 통해 사용료를 결정하도록 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본에서 실제로 재정까지 이르는 사례가 매우 드물며²⁴⁾, 대부분 관행적 합의와 자율 협상을 통해 사용료가 결정된다²⁵⁾.

최근 일본에서는 JASRAC과 넥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와의 음악 사용료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문화청이 중재에 나선 사례가 있었다²⁶⁾. 재정 결과 공개 직전에 당사자 간 비공개 합

15) 최진원, 앞의 논문, 50면.

16) 文化庁, “著作権等管理事業法の制定とその背景”, <<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seidokaisetsu/kanrijigyoho/seitei/>>, 검색일: 2025. 7. 20.

17) 관리사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관리사업자는 사용료 규정을 문화청 장관에게 사전 신고한 후 30일 간의 사용료 규정의 실시 금지 기간이 경과하면 적용할 수 있다.

18) 株式会社サンビシネス, “著作権等の集中管理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文化庁, 2016, 62-63면. 복수 관리사업자 체제하에서는, 사용료는 수요와 공급, 경쟁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정해져야 하며, 강제 규제보다는 시장경제 원칙에 맡긴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19) 관리사업법 제23조 제1항.

20) 관리사업법 제23조 제2항.

21) 관리사업법 제23조 제4항.

22) 관리사업법 제24조 제1항~제3항, 제5항, 제6항.

23) 관리사업법 제24조 제4항.

24) 문화심의회의는 문부과학성설치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문화청에 설치되어 있고, 문부과학대신 및 문화청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저작권 및 저작권접관·문화재·문화공로자의 선정 및 문화·예술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 및 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키피디아(Wikipedia), “文化審議会”, 위키피디아, <<http://ja.wikipedia.org/wiki/%E6%96%87%E5%8C%96%E5%AF%A9%E8%AD%B0%E4%BC%9A>>, 검색일: 2025. 7. 20.

25) Japanese Society for Rights of Authors, Composers and Publishers (JASRAC), “Fiscal 2024 Business Affairs Report”, JASRAC, 12면.

의가 이루어져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일본의 시스템은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 시에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개입을 최소·사후적으로만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일본은 사용료 결정에 있어 시장 자율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시장 불균형 시 정부 개입 안정장치가 유지되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협상력 균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만 제도의 실효성이 보장됨을 시사한다.

3.3. 영국의 저작권심판소 제도

영국의 저작권 사용료 결정 방식은 원칙적으로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사용료 및 이용조건은 신탁관리단체(Collecting Society)와 이용자 간 자율협상에 의해 우선적으로 정해진다. 이 과정을 통해 서비스 유형, 시장 환경, 업종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은 체결되며, 사용료는 행정기관의 직접 개입 없이 유연하게 조정된다.

그러나 자율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DPA)」에 따라 설치된 저작권 심판소(Copyright Tribunal, 이하 ‘심판소’)가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심판소는 당사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심리 절차를 거쳐²⁷⁾,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 조건을 판정한다²⁸⁾. 그리고 결정문은 공개되며, 법적 구속력을 갖고 향후 유사사건의 선례로 활용될 수 있어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또한 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가 가능하지만 사실 판단이 아니라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²⁹⁾.

실제 PRS for Music 등 음악 신탁관리단체와 유튜브, 스포티파이 등 스트리밍 사업자, AI 음원 생성 플랫폼과의 수익 분배 갈등에서 심판소 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³⁰⁾ 영국은 특히 OTT, 스트리밍, AI 데이터 마이닝 등 신유형 서비스 출현 후 다양한 요율 분쟁을 겪으면서 독립적 심판 기구 체계가 신속성, 공정성, 시장신뢰 제고에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4. 독일의 저작권중재소 제도

독일 역시 신탁관리단체(Verwertungsgesellschaft)와 이용자 간 자율 협상을 원칙으로 한다³¹⁾. 양측은 시장 현실, 장르 및 매체 유형, 서비스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자유롭게 사

26) OTT·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재정 및 중재 신청 건수가 소폭 증가했다는 점 등이 공식 보고되고 있음(文化庁,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政策小委員会(第3回), DX 時代における適切な対価還元についての関係者からのヒアリング”,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seisaku/r06_03/>, 검색일: 2025. 7. 20).

27) GOV.UK, “Copyright Tribunal: hearing procedure and listed cases”, GOV.UK, <<https://www.gov.uk/guidance/copyright-tribunal-hearing-procedure-and-listed-cases>>, 검색일: 2025. 7. 20.

28) GOV.UK, “The Copyright Tribunal Rules 2010 in UK”, legislation.gov.uk, <<https://www.legislation.gov.uk/ukxi/2010/791/made>>, 검색일: 2025. 7. 20.

29) GOV.UK, “Copyright Tribunal: applications procedure”, GOV.UK, <<https://www.gov.uk/guidance/copyright-tribunal-applications-procedure>>, 검색일: 2025. 7. 20.

30) AI 데이터 마이닝·AI 모델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자와 플랫폼/AI 기업(예: Getty Images v. Stability AI 사건)에 대한 분쟁 등 법원과 심판소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e Gaulle Fleurance & Associés, “AI and copyright: What future for the UK Government’s consultation?”, DDG, <<https://www.ddg.fr/actualite/ai-and-copyright-what-future-for-the-uk-governments-consultation>>, 검색일: 2025. 7. 20.

31) 집중관리단체법(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durch Verwertungsgesellschaften, Verwertungsgesellschaftengesetz, VGG) 제36조.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durch Verwertungsgesellschaften* (Verwertungsgesellschaftengesetz - VGG)”, Gesetze im In

용료와 이용 조건을 협의·제결한다. 이러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개별 사정에 맞는 유연한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사전 규제 개입은 최소화된다.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2016년 제정된 「집중관리단체법(Verwertungsgesellschaftengesetz, VGG)」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저작권중재소(Schiedsstelle)³²⁾는 분쟁 조정자로 개입한다. 중재소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받는 준사법적 조정기관으로,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하고 권고적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 조정안은 양측이 수용할 경우 법원의 판결과 같이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거부 시에는 민사 소송 절차에 따라 사용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³³⁾ 이 때 중재소의 기록은 법적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중재위원회의 결과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된다³⁴⁾.

독일의 경우 GEMA와 같은 음악 신탁관리단체도 음악 스트리밍 사업자와의 사용료 갈등을 겪은 바 있다³⁵⁾. 하지만 GEMA는 비즈니스 관계 유지의 중요성으로 법정 소송보다는 대체로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편, GEMA는 생성형 AI 시스템 제공업체를 상대로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활용한 것에 대해 세계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³⁶⁾,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사례는 AI 기반 음악 생성 및 OTT 등 디지털 혁신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저작권 사용료 체계가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이므로 판결 결과와 그에 따른 요율 조정 내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5. 미국의 저작권사용료심판 제도와 캐나다의 저작권위원회 제도

미국과 캐나다 또한 저작권 사용료 결정은 자율 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분쟁 발생 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공공기구가 개입하는 다층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당사자 간 협상이 우선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작권사용료심판소(Copyright Royalty Board, 이하 'CRB')가 개입해 케이블, 위성, 디지털 음원 등 특정 법정 라이선스 분야에 대해 공개 심리와 증거 검토를 거쳐 사용료율과 조건을 결정한다³⁷⁾. CRB는 법률에 근거한 공식적 절차를 통해 최고 5년간 적용되는 요율을 설정하며³⁸⁾, 결정 내용은 연방관보에 고시된다³⁹⁾.

CRB의 관할 대상이 아닌 사용료 분쟁이 발생하거나 협상 실패 시에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ternet, <<https://www.gesetze-im-internet.de/vgg/BJNR119010016.html>>, 검색일: 2025. 7. 20.

32) 독일에서는 "Schiedsstelle" 또는 "Arbitration Board"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이는 영어권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binding arbitration)와는 다른 개념이며 실제 기능은 조정(Mediation/Conciliation)으로, 법적 구속력은 당사자 수용에 의해서만 발생함.

33) German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The Arbitration Board under the Act on 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s", German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https://www.dpma.de/english/our_office/about_us/further_duties/cmso_copyright/arbitration_board_under_the_cmo_act/index.html>, 검색일: 2025. 7. 20.

34) 저작권관리단체법(VGG)에 따라 중재소가 제시한 합의 제안, 결의, 안내 및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이는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결정임을 알 수 있음.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Veröffentlichungen der Schiedsstelle nach dem VGG",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https://www.dpma.de/dpma/wir_ueber_uns/weitere_aufgaben/verwertungsges_urheberrecht/schiedsstelle_vgg/entscheidungen/index.html>, 검색일: 2025. 7. 20.

35) BBC News, "YouTube's seven-year stand-off ends", BBC News, 2016. 11. 1자; GEMA, "Distribution in Music on Demand (Streaming & Download)", GEMA, <<https://www.gema.de/en/music-creators/royalties/music-on-demand>>, 검색일: 2025. 7. 20.

36) GEMA, "GEMA sues for fair compensation", GEMA, <<https://www.gema.de/en/news/ai-and-music/ai-lawsuit>>, 검색일: 2025. 7. 20.

37) 17 U.S.C. §801(b).

38) 17 U.S.C. §804(b).

39) 17 U.S.C. §803(c).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를 통해 중재 및 조정 절차가 활용되며, 불성립 시에는 연방법원을 통한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된다⁴⁰⁾. 이 경우 저작권 등록을 완료한 저작물에 대해 침해 여부, 손해배상, 사용료 산정 등이 정식 재판을 통해 다뤄진다.

캐나다 역시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의 자율 협상을 우선하되, 협상 결렬 시 저작권위원회(Copyright Board of Canada)⁴¹⁾가 공개 심리⁴²⁾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⁴³⁾를 거쳐 최종 사용료와 이용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고시한다⁴⁴⁾. 해당 결정은 시장 전체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불복 시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양국 모두 공정성, 투명성, 유연성을 핵심으로 하며, 특히 캐나다의 경우 시장 특성과 기술 발전을 반영한 세분화된 요율 체계와 공개된 심리 및 결정문을 통해⁴⁵⁾ 절차적 신뢰를 높이고 있다.

3.6. 소결 및 시사점

종합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국가는 저작권 사용료 결정에 있어 사전 승인보다는 당사자 간 자율 협상과 사후적 조정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분쟁 발생 시에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개입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장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OTT나 AI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산업 구조 변화에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사전 승인제는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행정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정보 비대칭, 신기술 도입의 어려움, 비영리·중소 사업자의 진입 장벽, 실질적인 분쟁 예방의 한계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국제적 기준과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 개선에 있어 해외 사례에서 나타나는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 독립적인 분쟁 조정 체계, 기술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 그리고 전문기구의 단계별 개입 모델 등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개선을 함으로써 저작권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4. 국내 적용 가능성 및 개선 필요성

4.1. 주요 사례 분석 : 음악 저작권 사용료 분쟁 등

국내 저작권 사용료 분쟁의 대표적 사례는 방송사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간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 갈등이다⁴⁶⁾. 최근 수년간 음저협은 방송사에 대한 음악 저작권 사용료

40) 17 U.S.C. §803(d).

41) 1989년 2월 1일에 개정·공포된 저작권법에 의해 설립. 협상이 결렬된 사용료 결정 외에 고아저작물 이용을 위한 강제허락 등을 담당하고 있음. Government of Canada, "Copyright Board of Canada", Government of Canada, <<https://www.canada.ca/en/treasury-board-secretariat/services/access-information-privacy/access-information/info-source/copyright-board-canada.html>>, 검색일: 2025. 7. 20.

42) Copyright Act of Canada, R.S.C., 1985, c. C-42, §68.4, §70.

43) Copyright Act of Canada, R.S.C., 1985, c. C-42, §66.504.

44) Copyright Act of Canada, R.S.C., 1985, c. C-42, §66.71.

45) 캐나다는 관련 규정에서도 '공정성, 효율성,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강조하며, 모든 심리 절차와 결과물의 공시를 통한 신뢰 제고를 정책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Copyright Board Canada, "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 Copyright Board Canada, <<https://cb-cda.gc.ca/en/tools/rules-of-practice-and-procedure>>, 검색일: 2025. 7. 20.

46) 황동진, 「음저협 방송사용료 청구 관행에 제동…법무법인 린, 공정위 승소 견인」, 한경 Law & Biz, 2025. 5. 8자.

인상을 추진해왔으나, 인상 요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절차가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방송사와 음저협 사이에 행정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⁴⁷⁾.

특히 2020년대 들어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사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⁴⁸⁾ 장기화되는 경향까지 보였다. 이는 현행 승인제도의 경직성과 함께, 신탁관리단체의 사실상 독점적 지위가 방송사와 같은 산업 내 협상력이 구조적으로 불균형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음저협은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를 내세워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나, 방송사는 승인 요율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과 협상력 부재, 승인 절차의 비효율성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⁴⁹⁾.

OTT, AI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OTT 플랫폼, AI 기반 음악이나 영상 서비스 등은 기존 방송과 전혀 다른 이용형태와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송 사용료 요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새로운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⁵⁰⁾. 이에 불복한 국내 주요 OTT 사업자는 승인된 요율의 불합리성과 과도성, 협상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법적 구제에도 실패하여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저작권자의 데이터 제공 동의 문제, AI 생성물의 법적 권리 처리, 신탁관리단체의 기준 부재 등이 더욱 첨예한 분쟁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현행 승인제도가 저작권 사용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장기화·심화시키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문체부의 승인 지연, 기준의 불명확성,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 간 협상력의 불균형 등은 저작권 생태계의 신뢰성 저하와 산업 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속하고 투명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4.2. 해외 제도의 이식 가능성과 국내 사회적 조건 검토

해외 저작권 사용료 제도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논의할 때,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우리 사회의 제도적·산업적 구조와의 정합성이다. 일본,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은 복수의 신탁관리단체가 존재하거나, 자율 협상과 사후적 분쟁 조정 시스템에 기반한 유연한 저작권 사용료 제도를 운영한다. 예컨대, 일본의 재정제도는 복수의 신탁관리단체가 경쟁하는 조건, 당사자 간 협상력 균형, 사회적 신뢰가 선행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영국, 독일 등은 독립된 심판기구나 조정 시스템을 통한 사후적 분쟁 해결을 채택하여 서비스 특성과 시장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특정 신탁관리단체 중심의 집중적 관리, 정보 비대칭, 협상력 불균형 등 구조적 특수성이 뚜렷하여 이러한 제도를 단순히 도입할 경우 제도적 충돌이나 운영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립적인 재정기구나 저작권심판소와 같은 독립적 분쟁 조정

47) 한주성,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재」, 퍼블릭경제, 2023. 7. 26자.

48) 권혜미, 「PP-한음저협 저작권 7년 갈등 격화…법정공방 비화되나」, 전자신문, 2024. 8. 29자.

49) 정유진, 「“방송음악 사용료 갈등 풀리나” 지상파 3사, 비용산정 물꼬」, 매거진한경, 2024. 9. 30자.

50) 엘지유플러스, 케이티,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 인상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패소하여 현재 해당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특히 정부와 국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실질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으로 OTT 업계와 음악저작권협회 간 징수규정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이용경, 「[판결] LGU+·KT, ‘OTT 음악저작권료 소송’ 1심서 패소, 비용산정 물꼬」, 법률신문, 2022. 10. 28자; 김진아·한재혁, 「KT·LGU+ 문체부에 “음악 저작료 과도해” 소송 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2023. 9. 20자; 황윤기, 「국내 OTT 3사, ‘음악저작권료 인상취소’ 소송 최종패소」, 연합뉴스, 2024. 1. 30자.

기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당사자 간 자율 협상과 갈등 조정에 대한 사회적 경험과 문화적 기반도 충분하지 않다. 또한 신탁관리단체의 권한 집중과 중소기업이나 신기술 서비스와 같은 이용자의 경우 집단의 분산 및 취약함이 구조적으로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현실과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해외 제도의 단순한 모방이나 법령 차원의 수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는 문화적·사회적 배경, 산업 구조, 법체계, 이해관계자의 역량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작동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제도의 성공적인 이식은 한국적 맥락에 맞는 현실적 설계와 단계적 이행 전략, 그리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접근 전략이 필수적이다.

첫째, OTT·AI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처럼 규제환경 변화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일부 분야에서, 사전 신고제, 표준계약 제도, 독립 중재기구 등의 새로운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국내 제도 및 산업과의 적합성, 법적·기술적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보다 정교하고 안정적인 제도 설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들의 제도 이해도와 협상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신탁관리단체, 이용자, 창작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협상 교육, 제도 해설, 사례 기반의 실무 훈련, 정보 제공 확대 등을 병행함으로써 실질적 역량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자율 협상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사전 승인제 완화 또는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제도 도입 전에는 그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문화산업의 규범과 질서를 재구성하는 중대한 전환이기 때문이다.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제도 도입은 일괄적 전면 시행보다는, 단계적 확대 적용 방식이 바람직하다. 시범 운영 결과와 사회적 논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이처럼 해외 제도의 국내 적용은 단순한 법제도의 이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제도적 특성, 산업 구조, 기술 환경, 사회문화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신중한 분석과 점진적 접근이 요구된다. 아울러, 독립적 중재·조정 제도의 신설, 정보공개 및 투명성 강화, 협상 교육과 실무 역량 확충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반 마련과 실행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제도 개선이 궁극적으로는 저작권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기술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창작자 권익 보호와 이용자 접근성 간의 균형 확보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4.3. 국가 개입의 이론적 근거와 시장 자율성의 조화

저작권 시장은 원칙적으로 자유계약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며, 이용을 허락할지 여부와 그 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이용자는 이러한 권리자의 동의를 전제로 개별 협상을 통해 이용 조건을 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법제적으로도 저작권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므로, 계약을 통한 자율적 거래가 제도 설계의 기본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저작권 시장은 이러한 자유계약 원칙이 온전히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저작권자는 대체로 개인 창작자이거나 소규모 사업자에 불과하며, 대부분 권리

행사를 신탁관리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반면, 이용자는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종속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더해 신탁관리단체의 독점적 관리 구조, 이용자와 권리자 간 정보 비대칭, 시장 가격의 불투명성 등은 자유계약 원칙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약화시킨다. 결과적으로 저작권 시장은 자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 실패의 구조가 내재된 비대칭적 거래 환경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은 자율 협상만으로는 형평성 확보, 시장 기능의 정상 작동, 공정한 보상의 실현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은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며, 실제로 사전 승인이나 행정 규제와 같은 방식으로 공공성이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경직된 사전 승인 중심의 개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신속한 서비스 혁신을 어렵게 만들며, 이용자의 협상력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실무적인 분쟁이 증가하거나 규제 회피를 위한 복잡한 행정 절차가 발생함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저작권 시장 내 정보 비대칭과 독점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 개입 방식은 사전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사후 조정과 중립적 중재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정보 공개 의무화, 이용 이후의 공정성 심사, 독립적 조정기구의 개입 등은 시장 기능을 보완하면서도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유연한 개입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은 시장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함께 확보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도입과 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조화롭게 달성하며, 산업 경쟁력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규제의 유연성과 기능적 개입 간의 균형을 통해 저작권 시장의 지속 가능성과 제도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절충적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저작권 사용료 산정 체계는 자율성과 공공성, 시장 논리와 규범적 가치 간의 균형 속에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이는 단순한 외국 제도의 도입이나 표면적 제도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구조와 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유연하고 혼합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특히, 제도 개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적 중재제도 신설, 정보 비대칭 해소 장치 마련, 이해관계자의 협상 역량 강화, 분쟁 예방 및 조정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 복합적인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은 저작권 시장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산업 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5. 제도 개선 방향

5.1.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저작권 사용료의 결정 방식은 단순한 법령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콘텐츠 산업의 구조, 이용자 환경, 문화정책의 방향성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정책 과제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승인제는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 현장의 복잡성과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환경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OTT, AI 기반 콘텐츠 서비스의 확산은 기존 제도 틀 내에서 합리적인 사용료 산정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신탁관리단체의 독점적 지위와 정보 비대칭 문제는 협상력을 더욱 비대칭적으로 만들어, 저작권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시장 효율성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적 현실과 국제적 제도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즉,

저작권 사용료 제도는 단편적인 조정이나 일회성 개선이 아닌, 정책적 통합성과 실행력을 갖춘 전략적 전환이 요구된다.

5.2. 승인제의 단계적 완화 및 유연화

현행 승인제는 결정된 사용료가 모든 저작물과 이용 상황에 일괄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로, 실제 산업 현장의 다양성과 변화하는 이용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나 비정형적 이용 형태에 대해서는 경직된 제도 운영이 시장 기능을 제약하고, 창의적 서비스 도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승인제의 단계적 완화와 유연화가 필요하다⁵¹⁾. 먼저, 저작물의 성격, 이용 방식, 서비스 유형에 따라 승인제가 필요한 영역과 자율적 요율 결정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OTT, AI 생성 콘텐츠 등 신유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대신 사전신고제나 간이신고제 등 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는 것이다.

또한 금액의 소규모·비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일시적 이용에 대해서는 포괄 승인이나 간이 신고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 신속한 서비스 출시와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음악 저작권처럼 복수의 신탁관리단체⁵²⁾가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각 단체가 독립적으로 사용료 금액이나 요율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신탁관리단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제도의 유연화는 저작권 사용료 결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5.3. 재정·중재제도의 도입 및 법제화

당사자 간 자율 협의가 결렬되었을 경우, 정부가 사전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중립적인 독립적인 제3의 기구가 사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독립적인 재정(裁定) 또는 중재 기구를 설치하고, 그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⁵³⁾. 그리고 이러한 기구는 일정 기준 이상의 사용료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거나 필요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정 과정에서는 객관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운영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일본의 재정제도나, 영국의 저작권 심판소(Copyright Tribunal)와 같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중재기구의 운영은 요율 결정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적 경직성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와 시장 환경에 적합한 하위규범과 운영 방식을 병행하여 설계해야 한다. 결국, 재정·중재제도의 도입은 저작권 사용료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 시장의 자율성 확대, 그리고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1) 이용, 「박양우 장관 “저작권 르네상스 시대… 규제완화·자율강화”(종합)», 연합뉴스, 2020. 2. 4자.

52) 서정민, 「음악저작권신탁, 독점체제 깨졌다」, 한겨레, 2014. 9. 16자.

53) 박익환, “저작권 사용료 분쟁해결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102면 이하.

5.4. 정보 공개 확대와 투명성 제고

저작권 사용료 산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과 절차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다. 현재는 승인 요율, 심의 기준, 협의 과정 등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거나 모호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와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법령상 정보공개 의무 명확화이다. 사용료 결정의 기준, 협의 및 승인 절차, 승인 경과 등 핵심 정보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시장 참여자가 동일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보 접근성 및 시스템 개선이다. 저작위 또는 별도의 공공 플랫폼을 통해 사용료 산정 기준, 심의 일정, 승인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데이터의 최신성, 검색의 용이성, 이해하기 쉬운 안내자료 제공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외부 의견수렴 절차의 제도화이다. 사용료 산정 및 승인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자, 공공참여 위원단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심의 및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이다. 심의 기준, 논의 과정, 결정 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 확대와 투명성 제고 방안은 저작권 사용료 결정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와 권리자 모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5.5. 협상 역량 강화 및 이용자 보호 제도 개선

이용자 측, 특히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문화예술 단체 등은 협상력 부족으로 인해 제도의 개편의 수혜를 체감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용자 단체에 대한 협상교육, 법률지원, 공공자문서비스 등을 통해 협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표준계약서 보급, 분쟁조정제도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사전분쟁 예방 및 사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비용 경감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저작권 이용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저작권 사용료 결정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문화예술 단체 등 협상력이 취약한 이용자 집단에 대한 지원과 보호 장치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첫째, 이용자의 협상역량 강화이다. 중소사업자, 비영리기관, 예술단체 등은 전문 인력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 협상교육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법률 지원, 공공자문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전문 컨설팅이나 워크숍, 온라인 교육 자료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상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준계약서 보급 및 분쟁조정제도 기능 강화이다. 저작물 이용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함으로써, 복잡한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이나 오해를 예방할 수 있다. 분쟁조정제도의 기능을 확대하여, 사전 분쟁 예방은 물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중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와 권리자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쟁조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사전 예방 및 사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부터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분쟁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후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책은 단순히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저작권 이용의 활성화와 시장의 공정성 제고, 그리고 문화산업의 지속적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결국 협상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 제도는 저작권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5.6. 종합 및 기대 효과

이상의 개선 방안은 각각 독립적으로도 실효성이 있지만,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제도 개선은 단순한 기능적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리자의 권익 보호와 이용자의 접근성 확대, 시장 자율성의 강화와 행정 절차의 유연화, 정보 투명성의 제고와 사회적 신뢰 회복, 나아가 산업 혁신 촉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유연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 전환은 한국 저작권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학술지(국내 및 동양)

최진원, “음악산업 발전과 징수규정 승인제도에 대한 소고”, 『정보법학』, 제16권 제3호(2012).

신문기사

권해미, 「PP-한음저협 저작권 7년 갈등 격화…법정공방 비화되나」, 전자신문, 2024. 8. 29자.

김진아·한재혁, 「KT·LGU+ 문체부에 “음악 저작권 과도해” 소송 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2023. 9. 20자.

박송이, 「“AI 학습, 저작권 침해 아냐” 잇단 판결…저작권 논쟁 새 국면?」, 주간경향, 2025. 7. 14자.

서정민, 「음악저작권실태, 독점체제 깨졌다」, 한겨레, 2014. 9. 16자.

안호천, 「문체부 “OTT 음악사용료 징수를 1.5% 높지 않다”…4개월간 다양한 의견 수렴」, 전자신문, 2020. 12. 20자.

이세연, 「대법원 결정에도…OTT-음악저작권계 “아직 할 말 많아”」, Fortune Korea, 2024. 2. 2자.

이용경, 「[판결] LGU+·KT, ‘OTT 음악저작권료 소송’ 1심서 패소, 비용산정 물꼬」, 법률신문, 2022. 10. 28자.

이웅, 「박양우 장관 ‘저작권 르네상스 시대…규제완화·자율강화’(종합)」, 연합뉴스, 2020. 2. 4자.

이정현, 「OTT 음대협, 정부에 “업계 - 음악창작자 상생논의의 장 마련을”」, 연합뉴스, 2024. 2. 1자.

정유진, 「“방송음악 사용료 갈등 풀리나” 지상파 3사, 비용산정 물꼬」, 매거진한경, 2024. 9. 30자.

한주성,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재」, 퍼블릭경제, 2023. 7. 26자.

황동진, 「음저협 방송사용료 청구 관행에 제동…법무법인 린, 공정위 승소 건인」, 한경 Law & Biz, 2025. 5. 8자.

황윤기, 「국내 OTT 3사, ‘음악저작권료 인상취소’ 소송 최종패소」, 연합뉴스, 2024. 1. 30자.

BBC News, 「YouTube’s seven-year stand-off ends」, BBC News, 2016. 11. 1자.

인터넷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권실태관리업 경쟁체제 도입 - 문체부,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실태관리업 허가 -”,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3721>, 검색일: 2025. 7. 2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공직유관단체로 신규지정, 투명성·신뢰성 제고. 붙임2. 저작권실태관리단체 및 보상금수령단체 현황자료”,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1645>, 검색일: 2025. 7. 20.

위키피디아(Wikipedia), “文化審議會”, 위키피디아, <<https://ja.wikipedia.org/wiki/%E6%96%87%E5%8C%96%E5%AF%A9%E8%AD%B0%E4%BC%9A>>, 검색일: 2025. 7. 20.

文化庁, “著作権等管理事業法の制定とその背景”, 文化庁, <<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seidokaisetsu/kanrijigyoho/seitei/>>, 검색일: 2025. 7. 20.

文化庁,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政策小委員会(第3回), DX時代における適切な対価還元についての関係者からのヒアリング”,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seisaku/r06_03/>, 검색일: 2025. 7. 20.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durch Verwertungsgesellschaften (Verwertungsgesellschaftengesetz - VGG)”, Gesetze im Internet, <<https://www.gesetze-im-internet.de/vgg/BJNR119010016.html>>, 검색일: 2025. 7. 20.

Copyright Board Canada, “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 Copyright Board Canada, <<https://cb-cda.gc.ca/en/tools/rules-of-practice-and-procedure>>, 검색일: 2025. 7. 20.

De Gaulle Fleurance & Associés, “AI and copyright: What future for the UK Government’s consultation?”, DDG, <<https://www.ddg.fr/actualite/ai-and-copyright-what-future-for-the-uk-governments-consultation>>, 검색일: 2025. 7. 20.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Veröffentlichungen der Schiedsstelle nach dem VGG”,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https://www.dpma.de/schiedsstelle>>, 검색일: 2025. 7. 20.

- ches Patent- und Markenamt, <https://www.dpma.de/dpma/wir_ueber_uns/weitere_aufgaben/verwertungsges_urheberrecht/schiedsstelle_vgg/entscheidungen/index.html>, 검색일: 2025. 7. 20.
- GEMA, “GEMA sues for fair compensation”, GEMA, <<https://www.gema.de/en/news/ai-and-music/ai-lawsuit>>, 검색일: 2025. 7. 20.
- GEMA, “Distribution in Music on Demand (Streaming & Download)”, GEMA, <<https://www.gema.de/en/music-creators/royalties/music-on-demand>>, 검색일: 2025. 7. 20.
- German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The Arbitration Board under the Act on 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s”, German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https://www.dpma.de/english/our_office/about_us/further_duties/cmos_copyright/arbitration_board_under_the_cmo_act/index.html>, 검색일: 2025. 7. 20.
- Government of Canada, “Copyright Board of Canada”, Government of Canada, <<https://www.canada.ca/en/treasury-board-secretariat/services/access-information-privacy/access-information/info-source/copyright-board-canada.html>>, 검색일: 2025. 7. 20.
- GOV.UK, “Copyright Tribunal: applications procedure”, GOV.UK, <<https://www.gov.uk/guidance/copyright-tribunal-applications-procedure>>, 검색일: 2025. 7. 20.
- GOV.UK, “Copyright Tribunal: hearing procedure and listed cases”, GOV.UK, <<https://www.gov.uk/guidance/copyright-tribunal-hearing-procedure-and-listed-cases>>, 검색일: 2025. 7. 20.
- GOV.UK, “The Copyright Tribunal Rules 2010 in UK”, legislation.gov.uk,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0/791/made>>, 검색일: 2025. 7. 20.

연구보고서

- 박익환, “저작권 사용료 분쟁해결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 임원선, “저작권 이용허락 효율화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07.
- 株式会社サンビジネス, “著作権等の集中管理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文化庁, 2016.
- Japanese Society for Rights of Authors, Composers and Publishers (JASRAC), “Fiscal 2024 Business Affairs Report”, JASRAC, 2025.